



법령/자료

법령정보

제개정고시등

제개정고시등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고시번호	2019-71호	분야	분류	등록일	2019-08-26	조회수	4054
------	----------	----	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71호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사용 기준을 신설하며,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식품유형 통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용기준을 변경하고, 영·유아식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천연향료에 사용되는 기원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한편, L-글루탐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시험법을 개선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

- 1) 미생물 등 배양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 규정 명확화 필요
- 2)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(Ⅱ. 2. 4))
- 3) 미생물 등 배양 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규정 명확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민원 이해 제고

나. “글루탐산”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

- 1) 유해시약을 저독성의 시약으로 대체 및 성분규격의 국제기준과 일치 필요
- 2) “L-글루탐산”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중 피롤리돈카복실산의 시험법 개선(Ⅱ. 4. 가. L-글루탐산, L-글루탐산암모늄, L-글루탐산칼륨)
- 3) “수용성안나토” 등 3품목의 확인시험, 순도시험,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(Ⅱ. 4. 가. 수용성안나토, 비타민B12, 보존료제제)
- 4) 시험법 개선을 통한 시험자 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

다. “천연향료” 기원물질 명칭 등 정비

- 1) 천연향료 기원물질의 한글명 명시 등 수정 필요
- 2) 천연향료 기원물질 59종에 대한 명칭, 학명 수정(Ⅱ. 4. 가. 천연향료)



법령/자료

법령정보

제개정고시등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

2019. 8. 26.

부서 | 첨가물기준과 이상호 043-719-2517

만족도를 선택해주세요 ▼

평가하기

(0건)

(0건)

(0건)

(0건)

(1건)

이전글

목록

다음글



법령/자료

법령정보

제개정고시등

개인정보서디방심 서식견상책 누시별신와번호 RSS 이공안내

산하기관홈페이지

이동

종합상담센터 : 1577-1255

우)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

Copyright©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. All rights reserved

